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39
----------	------

2016년12월19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22. 박양숙 의원
2. 회부일자 : 2016. 11. 23.
3. 상정일자 : 제271회 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12월 19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들의 공적에 비해 열악한 지원 실정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해당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아울러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생활보조수당(월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나. 4.19혁명 유공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월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추계자료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개정안의 취지 및 현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 기본법」(제19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음.

국가보훈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그러나 중앙정부의 보훈예산 한계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놓여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집행부는 서울시 거주 차상위계층 이하에 속한 국가보훈자를 약 5,200명으로 추산하고 있음.
- 개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수당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며 이들의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 또한 4.19혁명유공자, 5.18 민주화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이하 ‘민주유공자 등’)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는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월 보상금 지급액(397,00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유공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 4.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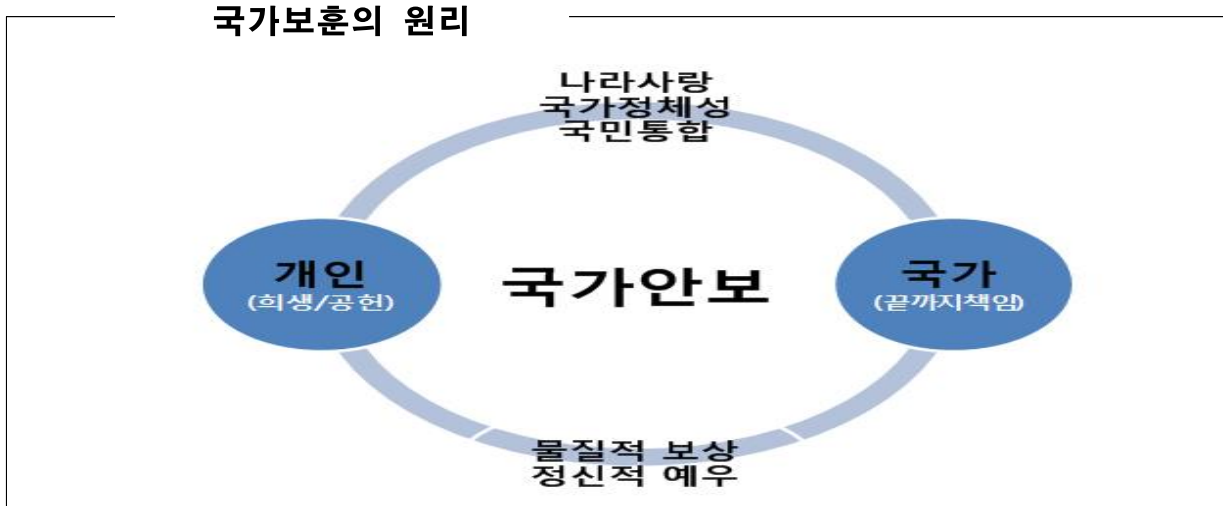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4·19혁명공로자는 제외한다)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9.15., 2012.2.17.>

④ ~ ⑤ (생략)

2 필요성 및 검토 의견

- 국가 보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 「국가보훈 기본법」의 목적규정을 감안할 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영예로운 생활의 유지와 보장을 위한 실질적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중앙정부의 보훈예산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예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생활보조수당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중앙정부의 보훈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하고 물질적 보상을 통한 정신적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다소나마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 보훈예우 수당제도 신설 방안과 관련하여, 4.19혁명유공자와 5.18 민주화유공자의 민주주의 신장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이는 전쟁과 냉전기라는 국난의 과정에서 형성된 ‘호국 정신’과 함께 ‘민주헌정 수호’로서 대한국민의 중요한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겠음.
- 또한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에는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필요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훈예우 수당제도의 신설 방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보훈의 업무는 국가적인 사무로서 국가보훈대상자와 민주유공자 등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그 공로와 희생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예우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충분한 보훈 예산을 편성·확충하여 집행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상위 법령 개정과 보훈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수당을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집행과정상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참고자료

① 보훈대상자 위문현황(2014년~2016년)

(단위: 명/천원)

기년월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대상자	지급액	대상자	지급액	대상자	지급액	
계	17,293	887,840	19,906	956,110	21,188	998,110	
3.1절	1,801	180,100	1,849	184,900	1,827	182,700	10만원
4.19	329	32,900	324	32,400	320	32,000	10만원
5.18	575	57,500	550	55,000	544	54,400	10만원
6월호국보훈의달	12,747	402,640	15,375	475,010	16,672	526,210	3~10만원
8.15	1,805	180,500	1,780	178,000	1,803	180,300	10만원
애국지사 보훈명예수당	33	31,500	28	30,800	21	21,500	월10만원
애국지사 사망조의금	3	2,700	-	-	1	1,000	100만원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2014년~2016년)

(단위 : 명 /천원)

연 도 별	2014년	2015년	2016년(10월 기준)
대 상 자	50,681	49,522	47,160
지 급 액	31,058,190	30,730,090	22,621,780

③ 보훈단체 지원현황(2014년~2016년)

(단위 : 천원)

단 체	2014년	2015년	2016년
계	515,500	665,000	1,638,000
광복회서울시지부	144,500	158,000	136,000
상이군경회서울시지부	46,000	58,000	58,000
전몰군경유족회서울시지부	30,000	42,000	42,000
전몰군경미망인회서울시지부	30,000	42,000	42,000
무공수훈자회서울시지부	30,000	42,000	62,000
고엽제전우회서울시지부	-	-	-
특수임무유공자회서울시지부	40,000	52,000	92,000
6.25참전유공자회서울시지부	58,000	68,000	73,000
월남전참전자회서울시지부	54,000	120,000	520,000
5.18서울기념사업회	83,000	83,000	83,000
4.19민주혁명회	-	-	530,000

④ 호국보훈의 달 모범보훈대상자 시장표창수여 현황

(단위 : 명)

연 도 별	2014년	2015년	2016년
대 상 자	30	18	16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양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9
----------	------

발의년월일 : 2016년 11월 22일
발 의 자 : 박양숙 의원(1명)
찬 성 자 : 이복근·박마루·김창원
권미경·오승록·김혜련
이병해·유 청·성백진
서윤기·김선갑·김용석(도봉)
박호근 의원(13명)

1. 제안이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들의 공적에 비해 열악한 지원 실정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해당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아울러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생활보조수당(월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나. 4.19혁명 유공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월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유족 및 가족제외)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

다만,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생활보조수당에서 각 수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유족 및 가족제외)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 하고,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해 지원 받고 있는 보상금 및 수당의 총액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상이등급별 7급에 해당되는 월 보상금 지급액 미만의 금액을 지원받는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2호, 제13호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

다만,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가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생활보조수당 및 제4항의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65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타 조례에 따른 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생활보조수당에서 각 수당의 금액을 감액하고 지급함
- 같은 조례안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제4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65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하고,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보상금 및 수당의 총액이 상이등급별 7급(월 397천원)미만의 금액을 지원받는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5·18부상자, 5·18기타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월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타 조례(자치구 조례 포함)에 따른 수당을 지원받는 경우는 타 조례 우선 지원 원칙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지원 하지 아니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
 - ※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속하는 본인 및 유족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애국지사),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7호(무공수훈자), 제9호(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제10호(참전유공자), 제12호(4·19혁명부상자), 제13호(4·19혁명공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제3호(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특수임무부상자) 및 제3호(특수임무공로자)
- 보상금 총액이 상이등급별 7등급(월 397천원)미만의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5·18부상자, 5·18기타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에게 보훈예우수당(월 5만원)

나. 전제

- 1)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
- 2) 생활보조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의 지원 대상 범위는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속하는 본인 및 유족에 한함
- 3) 생활보조수당과 보훈예우수당 지원액과 지원인원은 추계기간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4) 생활보조수당은 월10만원을 적용하고, 지원인원은 연 4,482명(감액대상자 1,865명 포함)을 기준으로 산출함
- 5) 보훈예우수당은 월 5만원을 적용하고, 지원인원은 연 1,165명을 기준으로 산출함

다. 추계기간 : 시행후 5년(※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용 발생 예상)

라. 방법

- 1) 생활보조수당 지급인원은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120,160명('16.9월 기준)중 경기도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비율 3.73%를 적용하여 산출
 ※ 생활보조수당 지급인원 =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x 경기도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 선정비율
 $4,482명 = 120,160명 \times 3.73\%$
- 2) 생활보조수당은 전액지원액(월 10만원)과 감액지원액(월 5만원)을 합산하여 산출
 ※ 생활보조수당 지원액 = 전액지원액(전액지원인원 x 10만원) + 감액지원액(감액지원인원 x 5만원)
 ※ 감액지원자 = 서울시 기 지원 참전명예수당자 x 경기도 생활보조수당 대상자 선정비율
 $1,865명 = 50,000명 \times 3.73\%$
- 3) 보훈예우수당 지원인원은 국가보훈대상자별 보훈급여금 지급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보상금 및 수당 총액이 상이등급별 7등급(397천원)미만인 인원 1,165명 전수를 적용하여 산출
 ※ 보훈예우수당 지원인원 = 보훈급여금 437천원 미만인자
 (4 · 19혁명부상자+4 · 19혁명공로자+5 · 18부상자+5 · 18기타희생자+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 1,165명 = 보훈급여금 397천원 미만인자(0+197+302+249+0+417)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24,792,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7)	2차년도 (2018)	3차년도 (2019)	4차년도 (2020)	5차년도 (2021)	합 계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수당 (제7조)	생활보조수당(제3항)	4,259,400	4,259,400	4,259,400	4,259,400	4,259,400	21,297,000
		보훈예우수당(제4항)	699,000	699,000	699,000	699,000	699,000	3,495,000
	소계(b)	4,958,400	4,958,400	4,958,400	4,958,400	4,958,400	24,792,000	
□ 총 비용(b-a)			4,958,400	4,958,400	4,958,400	4,958,400	4,958,400	24,792,0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담 당 관
정책조사팀장
주 무 관

예산정책담당관
남 승 우
여 차 민
최 경 희

☎02-3705-1282, e-mail(hiru90@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
- 보상금 총액이 상이등급별 7등급(월 397천원)미만의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5·18부상자, 5·18기타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의 보훈예우수당(월 5만원)

2. 세부추계내역

가. 생활보조수당

- 총비용 ≒ 21,297,000천원

$$- \text{총비용} = \sum_{i=1}^5 (\text{연간 생활보조수당})_i$$

· i = 비용추계 연차(2017~2021년)

$$\begin{aligned} \bullet \text{연간 생활보조수당} &= \text{연간 전액 지원액} + \text{연간 감액 지원액} \\ &= (\text{지원인원} \times 100,000 \text{원} \times 12 \text{개월}) + (\text{지원인원} \times 50,000 \text{원} \times 12 \text{개월}) \end{aligned}$$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전액 지원액(2617명)	3,140,400	3,140,400	3,140,400	3,140,400	3,140,400	15,702,000
감액 지원액(1,865명)	1,119,000	1,119,000	1,119,000	1,119,000	1,119,000	5,595,000
계(4,482명)	4,259,400	4,259,400	4,259,400	4,259,400	4,259,400	21,297,000

- 지원인원 = 4,482명

$$\begin{aligned} &= \text{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times \text{경기도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 선정비율} \\ &= 120,160 \text{명} \times 3.73\% \end{aligned}$$

※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인원은 국가보훈처 '16.9월 기준 인원 참조, 경기도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 선정비율은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138,908명중 '16년 9월 생활보조수당 지급인원 5,177명의 비율을 적용함[참고자료]

- 연간 전액 지원액 ≒ 3,140,400천원

$$= 2,617 \text{명} (\text{전액 지원인원}) \times 100,000 \text{원} \times 12 \text{개월}$$

※ 전액 지원인원은 지원인원(4,482명)에서 감액지원 인원(1,865명)을 제외한 인원임

※ 전액 지원인원 = 지원인원 - 감액 지원인원

$$2,671 \text{명} = 4,482 \text{명} - 1,865 \text{명}$$

- 연간 감액 지원액 ≒ 1,119,000천원

$$= 1,865 \text{명} (\text{감액 지원인원}) \times 50,000 \text{원} \times 12 \text{개월}$$

※ 감액 지원인원은 서울시에 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자 50,000명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 선정비율 3.73%를 적용하여 산출함

※ 감액지원인원 = 서울시 기 지원 참전명예수당자 x 경기도 생활보조수당 대상자 선정비율
865명 = 50,000명 x 3.73%

나. 보훈예우수당

- 총비용 ≒ 3,495,000천원

$$- \text{총비용} = \sum_{i=1}^5 (\text{연간보훈예우수당})_i$$

· i = 비용추계 연차(2017~2021년)

$$\begin{aligned} \bullet \text{연간 보훈예우수당} &= \text{지원인원} \times \text{지원금액}(50,000 \text{원}) \times 12 \text{개월} \\ &= 1,165 \text{명} \times 50,000 \text{원} \times 12 \text{개월} \end{aligned}$$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보훈예우수당	699,000	699,000	699,000	699,000	699,000	3,495,000

· 지원인원 = 보훈급여금 437천원 미만인자(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5·18부상자+5·18기타희생자+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1,165명 = 0 + 197 + 302 + 249 + 0 + 417

※ 지원인원은 「국가보훈대상자별 보훈급여금 지급현황」 보상금 및 수당총액이 상이등급별 7등급(437천원)미만인 인원 1,165명 전수를 적용하여 산출[참고자료2]

【참고】 국가보훈처 보훈대상별 현황 및 보훈급여금 지급현황 자료

1. 경기도 보훈대상별 현황 :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 선정비율 산출내역

-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138,908명중 '16년 9월 생활보조수당 지급인원 5,177명으로 3.73%

(단위 : 명)

구분	계	독립유공자 (유족포함)	전,공상 군경 (유족포함)	무공수 훈자 (유족포함)	재일학 도의용 군인	고엽제	4.19혁명 부상자 (유족포함)	4.19혁명 공로자 (유족포함)	참전유 공자	5.18민주 유공자 (유족포함)	특수임무 유공자(유족 포함)
국가보훈대상자	138,908	1,590	27,940	17,588	58	18,025	108	112	72,152	429	906
생활보조수당자	5,177	34	328	418	0	372	0	4	3972	18	31

2. 서울시 보훈급여금 지급현황 : 보훈예우수당 지급인원 산출내역

(단위 : 명, 천원)

연번	대상자격	인원수	보상급여금 합계	397천원미만여부
1	4.19혁명부상자	113	7,173~397	
2	4.19공로자	197	437~167	0
3	5.18 부상자	302	-	0
4	5.18 기타희생자	249	-	0
5	특수임무부상자	181	7,173~397	
6	특수임무공로자	417	-	0